

「평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남진삼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1. 9.
- 회부일자 : 2025. 1. 10.
- 상정일자 : 2025. 1. 16.

2. 제안이유

-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과 단체·사업장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·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(안 제3조)
-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(안 제4조)
- 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(안 제5조)
- 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(안 제6조)
- 비용부담(안 제7조)
- 관리감독 및 평가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,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)에서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 시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4조(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)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·시설 건립(10년 경과 시 제외) 사업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운영 사업으로 표지판 설치 대상을 명시함.

- 안 제6조(표지판 기간 및 위치)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의무를 고지하고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비용부담)에서는 표지판 설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표지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**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,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와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**

붙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제9조(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,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붙임 참고 자료

□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(2023.6.11.) 외 104건

(관내 3곳: 속초시, 홍천군, 화천군)